

고 소 장

고소인 김 ○ ○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이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고소인 △ △ △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고 소 사 실

- 1. 피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 ○. ○○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조, 부칙1개조로이루어진 ○○씨 ○○○파 ○○○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'이사 김○○', '감사 이○○'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○○, 이○○의 인장을 각 찍어, 권리행사 및 사실증명에관한 문서인 문중의 규약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- 2.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○○○○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○○씨 ○○○파 ○○○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증 방 법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 20○○년
 ○월
 ○일

 위 고소인
 김
 ○
 ○ (인)

 이
 ○
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			5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림 xxx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31조, 234조
범죄성립 요 건	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		
형 량	· 5년 이하의 징역 · 1,0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대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